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296-10

2008

BANGLADESH

방글라데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NTS



국세청

발 간 등 록 번 호

11-1210000-000296-10

2008

BANGLADESH

방글라데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머 리 말

국세청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현지국가의 조세제도와 행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책자」를 매년 발간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그 동안 세정간담회 등에서 우리 해외진출기업이 제기한 내용을 반영하여 「세정애로사항별 대처방안」을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여 현지 세무 정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10개 국가에 대한 세무안내책자를 새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무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8년 10월

국제조세관리관 강 성 태



목 차

방글라데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 ▶ 1. 국가일반 3
 - 1.1 일반개황 3
- ▶ 2. 제동향 5
 - 2.1 국내경제 7
 - 2.2 경제 구조 및 정책 8
 - 2.2.1 구조적 취약성 8
 - 2.2.2 성장 잠재력 8
 - 2.2.3 적극적인 경제구조 개혁과 외국인 투자 유치 9
 - 2.3 대외거래 10
- ▶ 3. 정치·사회 동향 11
 - 3.1 정치동향 13
 - 3.2 사회동향 14
 - 3.3 국제관계 14
-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15
 - 4.1 일반현황 17
 - 4-2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수출동향 17
 - 4-3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수입동향 18
 - 4.4 교역특징 18
- ▶ 5. 조세제도 19
 - 5.1 세제종류 21
 - 5.2 법인소득세 22
 - 5.3 Tax Holiday 22
 - 5.4 소득세 24
 - 5.5 사전소득세 25

5.6	부가가치세	25
5.5	원천과세	26
5.7	이중과세방지협정	26
▶ 6.	관세제도	27
6.1	관세제도 개황	29
6.2	관세분류와 과세 기준	29
6.3	특혜관세	30
6.4	관세 이외의 수입관련 제세	31
▶ 7.	통관·운송	33
7.1	통관절차 개황	35
7.2	통관절차 및 필요서류	35
7.3	화물반송과 경매	36
7.4	국제공항	37
7.5	국제항구	39
▶ 8.	성공사례·실패사례	41
8.1	주재국 시장 상황에 기초한 시장 개척 전략 성공사례	43
8.2	성공사례2(대림로얄보일러)	44
8.3	성공사례 2(썬스타)	45
8.4	실패사례	45
▶ 부록	47
1.	한-방글라데시 조세협약	49
2.	방글라데시 투자회사 현황	90



1.

국가 일반

1.1 일반개황



1. 국가일반

1.1 일반개황

수도	다카(Dhaka)	통화	타카(Bangladesh Taka, TK)
면적	148천 km ² (한반도 전체의 약2/3)	환율(달러당)	68.58(2007)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GDP(억\$)	678 (2007)
종족구성	벥골족 (98%)	인구	158.9백만명 (2007)
공용어	벥골어	1인당 GDP(\$)	1,300 (2007)
종교	이슬람교 (83%), 힌두교 (16%)	수출 규모(억\$)	117.5 (2007)
독립일	1971년 3월 26일	수입 규모(억\$)	160.3 (2007)

방글라데시는 남부 아시아의 인도 북동부에 있는 나라이다. 정식명칭은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이며, 남동쪽으로는 미얀마와, 남쪽으로는 벥골만과 접하며 나머지 지역은 인도와 접한다. 행정구역은 6개주(Barisal, Chittagong, Dhaka, Khulna, Rajshahi, Sylhet)로 나누어져 있다.

인도에 속하던 지역으로 1947년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할 때 파키스탄으로 독립하였다. 같은 이슬람교를 믿지만 벥골족이라는 이유로 무시와 핍박을 받아온 동파키스탄은 1971년 3월 26일 유혈 독립전쟁을 통해 서파키스탄(지금의 파키스탄)으로부터 분리·독립하였다.

방글라데시는 그 면적에 어울리지 않게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 면적은 그리스보다 10% 더 크지만, 인구는 14배로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다. 세계 제일의 인구 조밀국으로 세계 최빈국의 하나이다.

4 ● 방글라데시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

경제 동향

- 2.1 국내경제
- 2.2 경제 구조 및 정책
- 2.3 대외거래



2. 경제 동향

2.1 국내경제

〈 주요 국내경제 지표 〉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경제성장률	5.3	6.3	6.0	6.6	6.5
재정수지/GDP	-3.6	-3.5	-4.3	-4.0	-4.4
소비자물가상승률	5.7	9.2	7.0	6.8	9.1

자료 : IFS, EIU

■ 2007년 6.5%대의 양호한 경제성장 시현

방글라데시 경제는 지난 6-7년간 연평균 5-6%의 안정적인 성장을 했음. 2007년에는 GDP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부문이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근로자 송금 증가 등에 따른 민간 소비의 증대,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섬유부문의 수출 호조로 인해 6.5%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음.

■ 인플레이션 우려 증대

2007년에는 주요 식료품 가격 상승과 고유가의 영향으로 9.1%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음. 쌀 등의 주요 식료품 가격은 자연재해로 인한 국내 수확량 부족과 주요 쌀 수출국들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 전년 대비 50% 정도 상승하였음.

■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방글라데시는 취약한 세수기반, 낮은 세금 징수율 등의 이유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GDP 대비 재정수지 규모는 2006년 -4.0%, 2007년 -4.4%를 기록하였음.

2.2 경제 구조 및 정책

2.2.1 구조적 취약성

■ 수입의존도 높은 경제구조

방글라데시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대부분의 자본재와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이러한 높은 수입의존도로 인해 주요 산업이 환율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취약하고,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특히 주요 원자재인 석유에 대한 수입비중이 높아 최근의 국제원유 가격 상승은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방수출구조의 취약성

총 상품수출에서 의류제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5%로 의류산업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음. 또한 총 수출의 약 90%가 미국과 유럽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구조적 취약성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선진국의 의류제품 수요가 위축될 경우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자연재해에 취약한 구조

방글라데시는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국가로서, 몬순기후에 의해 7월과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또한 사이클론의 단골 상륙지역이기도 함. 이러한 자연재해는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특히 농업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

2.2.2 성장 잠재력

■ 노동집약적 산업의 발전

1억 5천만에 달하는 인구와 저렴한 노동력은 방글라데시의 성장동력으로서 의류 및 신발산업 등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달해왔음.

의류산업의 발달로 방글라데시 경제 주체들이 구매력을 회복해 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국민소득으로 인해 시장 규모가 매우 협소한 편임. 실질적인 구매력을 가진 수요자는 인구의 10% 정도이고, 전체 인구의 40% 정도는 여전히 하루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음.

■ 풍부한 천연가스 매장량

방글라데시는 약 20-40조 입방피트로 추정되는 풍부한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 이는 향후 30-50년 정도 자체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임.

가스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90년대 중반 가스산업 부분에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였고, 이후 미국, 영국 등에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정부의 가스 수출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으로 수출이 금지되어 있어 정유 메이저들의 투자가 본격화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임.

2.2.3 적극적인 경제구조 개혁과 외국인 투자 유치

방글라데시 정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구조 개혁과 민간투자 장려, 외국인투자 유치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추진해왔음. 부가가치세(VAT)를 도입하고 부과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였음. 또한 수출가공공단을 설치하고 세제상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Tax Holiday 제도를 통해 신규투자를 장려하였음.

한편 방글라데시는 군수산업 및 원자력발전소, 주화 및 화폐인쇄 등 일부 부분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외국에 개방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최근 미국 및 유럽 등은 가스·석탄 등의 자원개발과 금융, 병원, 이동통신 등 서비스 분야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음.

2.3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경 상 수 지	132	-279	-176	1,204	773
경 상 수 지 / GDP	0.3	-0.5	-0.3	1.9	1.1
상 품 수 지	-2,442	-3,003	-3,199	-2,890	-4,279
수 출	7,050	8,151	9,303	11,554	11,746
수 입	9,492	11,157	12,502	14,443	16,025
외 환 보 유 액	2,578	3,172	2,767	3,806	5,420
총 외 채 잔 액	18,774	20,129	18,928	20,521	21,231
총외채잔액/GDP	36.2	35.6	31.6	33.2	31.3
D . S . R .	5.9	5.2	5.4	3.7	5.1

자료 : IFS, EIU

■ 상품수지 적자규모 확대

방글라데시의 상품수지는 지속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중국에 대해 적용되던 세이프가드 조치 해소로 인한 경쟁 심화로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의류 부문의 수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 주요 수입품인 석유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액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2007년 상품수지 적자규모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43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였음.

■ 소폭의 경상수지 흑자 기록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등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로자 송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경상이전 수지 흑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경상수지는 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음.

■ 단기적 외채상환 불능 가능성 낮음

2007년말 기준 총외채규모는 212억 달러 수준으로 GDP의 31%에 이르나, 총외채의 대부분이 다자간 또는 양자간의 장기 공적채무여서 단기적 외채상환 불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3.

정치·사회 동향

3.1 정치동향

3.2 사회동향



3. 정치·사회 동향

3.1 정치동향

■ 정치불안 가속

2006년 10월 28일자로 지아 전 총리가 임기를 마치고, 총선을 위한 임시 정부가 출범하여 2007년 1월 22일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총선의 공정성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선거관련 정쟁이 격화되면서 정치적 불안이 높아졌음. 이에 따라 2007년 1월 11일 군부가 무혈쿠데타를 일으켜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총선을 무기한 연기하였음.

전 중앙은행 총재 출신의 파크루딘 아메드가 과도정부의 수반으로 지명되었고, 과도정부는 투표권자 재확인 및 투표자 ID카드 발급을 통해 2008년까지 총선을 실시할 것으로 약속하였고, 부정부패 청산, 선거법 개정,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수행 중에 있음.

■ 과도정부, 대대적인 부패청산 작업 실시

군부의 지원을 받는 과도정부는 비상사태법에 따라 공권력을 동원해 대대적인 부패청산 작업을 벌여 170여명의 거물급 정치인들을 체포하거나 구속하였음. 특히 정파간 폭력사태에 따른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AL(Awami League : AL)의 리더인 세이크 하시나 전 총리를 살인혐의로 구속하였고, BNP(Bangladesh Nationalist Party : BNP)의 리더인 베굼 갈레다 지아 전 총리를 부패 혐의로 구속하였음.

BNP와 AL은 과도정부와 선거법 개정 등과 관련된 협상 과정에서 하시나 전 총리와 지아 전 총리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3.2 사회동향

■ 사이클론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자연재해에 취약한 방글라데시는 2007년 11월 초강력 사이클론 ‘시드르(Sidre)’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음. UN은 사이클론으로 3천 300명이 죽고 4만 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56만 가옥이 붕괴되었다고 발표하였음. 특히 광범위한 농경지에 대한 피해로 농작물 생산이 감소하여 현지 식료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음.

2008년 4월 IMF는 홍수와 사이클론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217백만 달러를 방글라데시 정부 앞으로 긴급 지원하였음.

3.3 국제관계

■ 인도와의 관계 개선

방글라데시는 주요 교역국인 인도와 경제적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있음. 2008년 4월 14일에는 1965년 인도-파키스탄 전쟁을 계기로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던 인도-방글라데시간 열차 운행이 재개되었고, 이로써 양국간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원조 공여국들과의 관계 강화

World Bank를 비롯한 11개 원조 기구들은 방글라데시의 자연재해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15년에 걸쳐 총 4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원조 공여국들은 방글라데시의 민주화 진전과 인권탄압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어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에 대한 가시적인성과를 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4.

우리나라와의 관계

4.1 일반현황

4.4 교역특징



4. 우리나라와의 관계

4.1 일반현황

- 국교수립: 1973년 12월 18일(북한과는 1973년 12월 16일)
- 주요협정: 항공협정(1979), 문화협정(1979), 이중과세방지협정(1984), 투자보장협정(1988), 경제기술협력협정(1995)

■ 제 5위의 경협 지원 대상국

대 방글라데시 EDCF 지원금액은 2008년 4월말 기준으로 총 5건, 1,247 억원으로 제 5위의 지원 대상국임.

방글라데시와 교역 규모는 '07년에는 수출 612백만, 수입 142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대 방글라데시 해외직접투자는 '08년 3월말 현재 제조업중심으로 450건, 189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단위: 천달러)

구 분	2005	2006	2007	주요 품목
수 출	611,137	648,316	611,524	종이제품, 철강판, 합성수지 등
수 입	45,495	68,894	141,821	가죽, 동제품, 의류 등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4-2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수출동향

6억불 내외의 수출시장으로 2001년 균합수출로 최대 6억 5,000만 달러 수출하였음. 2007년 1-7월 기간 수출 12.2% 감소하였음. 방글라데시 정부의 과도한 자금규제로 바이어들의 L/C개설 자제로 섬유기계 수출감소함. 아연피의 계절적 요인 및 일부 종이제품 등의 수입전환이 주요 이유임.

의류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및 섬유기계가 주력 수출상품이었으나 최근 종이제품, 비철금속제품, 철강제품 등으로 제품구조 변화 중이나 면직물, 합성직물 등의 경우 방글라데시 생산급증 및 중국산 대체로 매년 수출 감소하고 있으며, 재봉기 등 섬유기계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2007년 들어 약간 주춤하였고, 아연, 동, 시멘트, 철강판 등 수출증가함. 냉난방기 수입 급증 및 핸드폰은 2006년 반짝 수출이 증가하였음.

4-3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수입동향

2007년 1-7월 중 184% 증가한 7,780만 달러이며 나프타 수입 증가가 주요인임. 황마 및 황마, 가죽 및 가죽제품 등을 주로 수입하며, 방글라데시 주력 생산품인 의류 수입이 조금씩 증가추세임.

4.4 교역특징

방글라데시에 필요한 기초 원자재 및 제조용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거나 우리나라 투자업체들이 의류 등 제조에 필요한 직물 등 수입이 대부분이었으나, 방글라데시 산업용 원자재로 제품구성 변화 중임. 방글라데시 내수시장 협소로 수출품목이 한정됨.

〈 우리나라와의 대 방글라데시 수출입 실적 〉

(단위: 백만 달러, %)

연 도	수 출		수 입		수 지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2000	626	23	22	63	604
2001	655	5	28	26	627
2002	506	-23	22	-19	484
2003	544	8	29	30	515
2004	620	14	42	43	578
2005	611	-2	45	10	566
2006	648	6	69	51	579
2007	612	-6	142	106	470

자료: Kotis 무역통계

5.

조세제도

- 5.1 세제종류
- 5.2 법인소득세
- 5.3 Tax Holiday
- 5.4 소득세
- 5.5 사전소득세
- 5.7 원천과세



5. 조세제도

5.1 세제종류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가세, 관세, 각종 간접세, 기타 인지세, 등록세, 면허세.

5.1.1 세금부과 기간

전 회계연도의 소득 관련 자료를 기초로 회계연도(금년7월 익년6월) 단위로 산정하며, 소득이 TK200,000 이상인 경우 매 분기 마지막 달 15일까지 사전납 부방식 채택.

5.1.2 조세규모

■ 2006/07 회계연도 기준 64억 달러

국세청 부과 세금이 95.7%로 대부분임. 세금구조는 관세는 21.3%이지만 수입부가세 및 특소세, 부가세 등 수입 시 납부하는 제세를 포함할 경우 수입상품에 전체 세수의 50%이상 의존, 부가세 36.2%(수입시납부 부가세가 전체 부가세의 50% 이상) 및 소득세 24.7%, 기타 소득세 및 주세, 담배세, 자동차세, 토지세 등이 16.4%.

5.1.3 문제점

소득세의 경우 주로 100여 개 외국인 투자기업이 전체 국세의 50% 가까이를 부담함

1억 4,000만 인구 중 납세인구가 법인을 포함 150만 명에 불과할 정도로 세수기반이 취약함

세율이 높고 탈세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여 광범위한 탈세가 조장되고 외국인 사업자위주로 세수확보.

ADB에서는 방글라데시의 연간 탈세 규모가 15~20억 달러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5.1.4 분쟁해결

세금관련 국세심판원(Taxes Appellate Tribunal)에 이의 및 소송 가능함.

5.2 법인소득세

구 분	세 율	구 분	세 율
국영기업	35%	금융기관	45%
비상장 민간기업	40% → 37.5% 인하	배당소득	15%
상장기업	30% → 27.5% 인하	무선통신 사업자	상장할 경우 35%. 비상장시 45% (2007년 7월1일부터)

신회계연도(2008-9년도)에 산업생산제고를 위해 법인세인하

소득세의 일부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기업에게 낮은 법인세율 부과하며, 국적에 관계없이 방글라데시에서 이루어진 모든 소득은 과세대상임.

5.3 Tax Holiday

5.3.1 대 상

2005~2008년 기간 중 다카 및 치타공 지역에 설립되는 신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4년간, 그 외 지역은 6년간 법인세 면제함. EPZ지역은 10년, 관계회사간 거래 시 Tax Holiday 취소되며, 이것은 내부이전가격을 이용한 Tax Holiday 남용 방지하기 위함임.

5.3.2 조건

재투자 장려를 위해 100% 가속감가상각이 허용되며 해당분야 서비스 산업 투자 무제한허용됨. 단, 재투자 한도는 면제된 소득액의 30%에서 40%로 인상되었고, 대상기업은 조세감면기간 종료 후 2년 내 면제된 소득액의 40%를 기존사업장 또는신규 사업장이나 공기업, 정부채 등에 재투자해야 함.

5.3.3 실태

2004년 NBR조사결과 80% 이상 확장기업이 단지 Tax Holiday 향유를 위한 것으로 조사되어 2008년까지 신규업체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5.3.4 적용분야

섬유, 의류, 섬유기계, 의약품, 멜라민, 플라스틱제품, 세라믹 및 위생용품, 철강산업, 비료산업, 살충제산업, 컴퓨터 하드웨어, 석유화학산업, 의약품재료, 화학, 기계, 조선, 보일러, Compressor 등의 산업분야와 항만 및 컨테이너 터미널, LNG/CNG Terminal 및 Transmission, 가스파이프라인 및 고가도로, 대형수처리 및 파이프라인, 폐수처리, 수출가공공단내 업체 등.

〈 Tax Holiday 적용 기업(2005 년 기준) 〉

tax holiday 기간별	투자업체별	법인 성격별
5 년: 1,619 개사	현지업체: 1,747 개사	private limited co: 1,722 개사
7 년: 168 개사	100% 외국투자업체: 25 개사	public limited co: 92 개사
9 년: 25 개사	합작투자업체: 42 개사	
10 년: 2 개사		

자료: NBR, 단 수출가공공단(EPZ) 입주업체는 제외

5.4 소득세

5.4.1 대상

방글라데시 내에서 발생되거나 귀속되는 모든 개인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임금, 채권이자율, 주택소득, 농업소득, 직업소득, 자본소득 등)

5.4.2 기업의 의무

모든 기업주들은 종업원의 소득을 원천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5.4.3 면세와 공제

소득자는 120,000타카까지의 소득은 면세가 되며, 월급의 50%나 10,000타카/월에 해당하는 집세 중 낮은 금액, 월 1,000타카의 교통비, 그리고 의료비의 경우 소득공제됨.

5.4.4 (개인)소득세율

〈방글라데시의 소득세 부과기준(2006.7 개정)〉

(단위: TK)

연 소득기준	월 소득기준	(개인)소득세 세율	비 고
120,000 이하	10,000 이하	면제	
250,000 이하	20,833 이하	10%	
300,000 이하	25,000 이하	15%	
350,000 이하	29,166 이하	20%	
350,000 초과	29,166 초과	25%	

* 비거주자는 25% 단일세율임

* 자료: 방글라데시 국세청

과세기간은 매년 7.1 ~ 다음해 6.30

5.5 사전소득세

2005년 7월부터 수입상들에게도 수입 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15%이외에 판매 후 1.5%의 사전부가세를 수입시 징수함.

2006년 7월부터 모든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3%의 사전소득세 부과하며, 수입 및 카드사용자는 소득이 있어 수입 및 카드를 사용하므로 해당 사전 소득세 납부실적을 실제 소득세 납부 시 제출하면 해당부분을 차감하여 소득세 징수함.

5.6 부가가치세

5.6.1 도입배경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는 1991.6월 제정 1991년 7월 1일부로 시행 중이며, 기존의 Excise and Salt Act(1944)와 Sales Tax Ordinance(1982) 및 Business Turnover Tax Ordinance(1982)를 대체하였음.

5.6.2 대상

모든 내수품과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15%가 적용되며, 2005년부터는 의사, 변호사, 사립학교까지 VAT 부과대상에 포함되었으며, 2006년 7월부터는 토지개발자, 그래픽디자이너, 흑백사진 현상소, 호텔, 데코레이터, 케이터링, 미용실, 선박 에이전트, 에어컨버스 서비스, 에어컨철도 서비스, 위성채널을 통한 광고서비스, 식당 등으로 확대되었음.

2007년 7월부터는 관광여류, 특진 의사, 변호사, 치과 등의 진료 시 부가세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코칭센터, 영어 중학교, 민간 의료 및 엔지니어링 대학 및 민간 대학교에 4.5%의 부과세 부가, 사진현상소, 특사배달, A/C버스 서비스에 부가세 4.5% 부과하는 등 부가세 대상 지속 확대추진하고 있음.

5.6.3 면제

농업장려를 위해 농기구 및 관개에 사용되는 전기제품은 부가세 면제되며, 인슐린, 구급상자, 보청기, 수술용 shadowless 램프, 소화기 등 수입 시에도 부가세 면제됨.

5.6.4 세입규모

2006-2007회계연도 부가세 징수금액 20억 달러이며 이중 50% 이상이 수입 상품에 부과된 세액임.

5.7 원천과세

정부공사 계약자 및 공급업자	2.5% (사전부가가치세)
수 입 업 자	수입가격의 2.5% (사전부가가치세)
수 출 업 자	수출가격의 0.5% (사전부가가치세)
공 개 입 찰	3%
인력송출업체	10%
은 행 이 자	10%
양 도 세	6%
배 당 소 득	법인15%, 거주자 10%, 비거주자 25%

5.8 이중과세방지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하여 협정국으로 송금되는 영업이익, 배당금, 이자, 로열티 등과 같은 국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

한국을 비롯하여 주요 유럽국가와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 등 21개국과 체결되어있으며, 투자보증협정도 한국을 비롯하여 유럽,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북한, 이란, 미국 등 24개국과 체결되어 있음.



6.

관세제도

- 6.1 관세제도 개황
- 6.2 관세분류와 과세 기준
- 6.3 특혜관세
- 6.4 관세 이외의 수입관련 제세



6. 관세제도

6.1 관세제도 개황

지속적인 무역 자유화 정책 추진을 통해 관세율을 꾸준히 인하하는 추세에 있으나 평균관세율은 20%로 전반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현 관세제도는 1984년에 개정된 1969년 관세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6월 재무부가 국세청(NBR)과 협의하여 결정한 세율을 금융법의 부칙으로 기재하고 있음.

수입 의존이 불가피하면서도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보건 등에 필요한 원면, 섬유기계, 농업용기계, 컴퓨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약품과 의료기계, 사료 등은 관세를 면제하고 있음.

방글라데시는 신회계연도가 시작되는 2008년 7월부터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기존품목의 성격에 따른 10, 15, 25%의 3단계 구조에서 기초원자재 및 중간재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함.

- 기초원자재: 10% -> 7%
- 중간재: 15% -> 12%
- 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현행 25%유지

아울러 신회계연도 (2008.7~2009.6) 예산은 기업의 산업생산 증대를 위해 자본재 기계및 부품 수입 시 수입관세를 기존 5%에서 3%로 인하함.

6.2 관세분류와 과세 기준

과세품목은 HS품목분류 기준을 사용하며 현재는 8단위까지 사용 중이며, 거의 대부분 종가세로 운영하며 일부 제품에 대해 종량세로 운영되고 있음. 선적 전 검사제도(PSI)가 2000년부터 의무화되어 선적 전 검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거래가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거래가격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기계류 등 선적 전 검사가 필요하지 않는 품목도 있음.

- 우리나라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파키스탄 등과 함께 Block “B”로 분류되어 스위스의 국제검사기관인 ‘Cotecna Korea가 선적 전 검사를 담당하였으나 2008년 3월20일부터 Bureau Veritas로 변경되었음.
- C&F 금액을 기준으로 30,000달러를 Floor Price로 하여 30,000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 금액의 1%를 수입상이 부담하고 Floor Price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상이 검사기관의 컨테이너 Sealing을 요구할 시 275달러, 요구하지 않을 시 250달러를 각각 부담해야 함.

6.3 특혜관세

영연방가입으로 영국 및 스리랑카 등에 공여하던 특혜관세제도는 1976년 1월부로 폐지되었으며,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AARC) 회원국인 네팔, 스리랑카, 부탄, 인도, 파키스탄, 몰디브 등 7개국에 대해서는 관세기준을 송장가격에서 5% 인하하는 우대조치를 취하다 (SAPTA)2006년 7월부로 SAFTA협정이 발효되어 2015년까지 평균관세율이 5%로 인하 될 예정이며 국별 민감품목 리스트를 작성하여 효과가 크지 않지만 방글라데시는 현재 1단계 관세인하조치 중임.

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는 개도국간 특혜관세 실시를 위한 방콕협정 서명국으로 2001년부터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에서 수입되는 197개 품목에 대해 20~35%의 관세혜택을 주고 있으며, 2006년에는 2차 관세인하조치에 따라 291개 품목에 대해 20~100%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

EU,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서 방글라데시에 GSP(일반특혜관세) 부여하고 있음.

6.4 관세 이외의 수입관련 제세

관세는 C&F 기준가격에, 특별소비세는 관세가 포함된 가격에, 부가가치세는 관세 및 특별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에 각각 부과되며, 나머지 제세는 관세평가 기준액(C&F)에 부과됨.

- 특별 소비세(SD, Supplementary Duty): 15.0% - 350%
-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15%
- 인프라 개발 부담금(IDSC, Infrastructure Development Surcharge):
2007년 7월 1일부폐지
- 사전 소득세(AIT, Advanced Income Tax): 3%
- 사전거래부가세(ATV, Advanced Trade VAT): 1.5%

특별 소비세는 관세 이외 약 600여 개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와 비슷한 supplementary duty를 15~350%까지 부과됨.(담배, 자동차 등)

- 15% 721개, 25% 237개, 65% 24개, 100% 27개, 250% 6개, 350% 16개 등
- 관세인하에 따라 발생하는 국세감소 및 국내산업보호 문제는 supplementary duty의 탄력적 부과를 통해 조정.

산업용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사전거래부가세가 면제됨.

수입자는 C&F로 수입함에 따라 해상 보험료를 방글라데시 보험사에 강제 납부하여야 하며, 선적전 검사료(수입자 부담으로 C&F 기준 1% 내외), 통관 및 운송료 등을 지불하여야 함.

관세부과 방식은 C&F 수입대금이 기준

- 물품대금(C&F) x 관세 x 특소세 x 부가가치세 + 사전소득세 + (사전거래부가세)



7.

통관·운송

- 7.1 통관절차 개황
- 7.2 통관절차 및 필요서류
- 7.3 화물반송과 경매
- 7.4 국제공항
- 7.5 국제항구



7. 통관·운송

7.1 통관절차 개황

화물의 도착통지와 함께 보세창고에 입고되는 즉시 관세사나 통관 에이전트를 선정하여 통관을 대행토록 하고 있음. 2007년 치타공항만의 크레인 운영권을 민간업체에게 이양하고 컨테이너에 대한 운반수수료를 인하하고, 하역노조를 해체시킴은 물론 수출과 수입을 이원화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로 통관 소요일은 빠르면 3~4일, 늦으면 1~2주 정도로 앞당겨 졌으나, 조그마한 서류 하자에도 세관공무원들의 시비 등이 매우 일반화되어 있음.

확립된 규정에 의한 통관절차상의 장벽은 없으나 높은 관세 및 각종 수입 관련 세금, 그리고 선적 전 검사에 의해 가격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관세평가나 세번 분류를 재조정할 때도 있으며, shipback 등에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등 전반적으로 통관이 매우 어려움.

절차상의 문제 외에도 각종 통관시설의 운영상의 난맥과 관련 인프라의 부족도 중요한 장애요인임. 유일의 국제 무역항인 치타공항은 수출입 물동량의 과다 유입에 계속되는Hartal(정치파업)과 부두노조의 파업으로 하역작업의 중단이 잦아 최악의 적체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7.2 통관절차 및 필요서류

통관절차는 관련 서류의 제출, 수입화물의 검사와 관세산정, 관세납부, 화물인도의 순으로 진행됨.

■ **통관 시 필요 서류**

- Bill of Entry (관세사나 통관 에이전트 작성)
- 상업 송장
- 선하증권
- 원산지 증명서(필요한 경우)
- 화물검사 증명서(필요한 경우)

■ **현지 통관업체: Homebound Packers and Shippers ltd**

- 주소: SW 26, Gulshan Ave., Dhaka
- 전화: (880-2) 8811021, 8816158
- 팩스: (880-2) 8823519
- 담당자: Titus Penhiro

■ **한국 통관업체: Sam Young Ltd**

- 주소: R 24, Block K, H 21, Banani, Dhaka
- 전화: (880-2) 9881094, 0171-630531
- 팩스: (880-2) 9886925
- 이메일: samyoung@bangla.net
- 담당자: Mr. Jason Lee, Managing Director

7.3 화물반송과 경매

세관을 통관하지 않은 화물의 반출의 경우에도 재수출로 규정하여 수출과 유사한 절차를 밟아야 반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명 SHIPBAK이 매우 힘들.

우선 선사를 통해 IGM(수입상, Consignee 등)변경을 추진해야 하며, L/C로 수입한 경우수입상과 L/C개설은행으로부터 화물포기각서를 받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동 승인을 Chief Controller of Export & Importer, 그리고 세관의 허가를 또다시 받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입상과 은행도 비협조적일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담당자를 일일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됨.

■ 항만비용 및 경매

치타공항만에 들어온 화물은 하역일로부터 일일 \$20.7정도의 부두료를 내야하며, 일정기간이 지난 경우 선사에 일일 \$9.5의 컨테이너 반송료(demurrage charge)는 물론 치타공항만 부두 적체료 등을 각각 납부해야 하며, 50일이 지난 경우 수출입업체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경매 처분되므로 바이어 인수거부 등으로 반송이 필요할 경우 경매연기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7.4 국제공항

- Zia Int'l Airport: 수도 Dhaka에 소재
- Chittagong Int'l Airport: 제 1의 무역항 치타공에 소재(태국, 두바이 직항 등)
- Shylet Int'l Airport: 차, 농산물 등 수출(영국직항)
- 국영 항공사인 Bangladesh Airline(Biman)
 - 적자가 심각하여 2007년 2월 브뤼셀, 뭘바이, 양곤 등의 노선을 폐쇄.
 - 국제선: 뉴욕, 파리, 런던, 프랑크푸르트, 로마, 동경, 두바이, 리야드, 쿠웨이트, 무스카트, 제다, 바레인, 뉴델리, 캘커타, 카라치, 도하, 싱가포르, 방콕, 홍콩, 쿠알라룸 푸르, 카투만두 등
 - 국내선: Chittagong, Jessore, Rajshahi, Sylhet, Cox's Bazar 및 Saidpur 등

- Biman 항공은 제대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비행기가 오래되고 낡아 쾌적함을 느낄 수 없으며, 승객이 적거나 정비상의 이유로 운항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가 잦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외국인들은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음.

■ GMG Airline

- 민간항공사로 주로 국내선 운영
- 2005년 2월부터 국제선 운항 시작, 방글라데시 최초 민간 국제선
- 취항노선: 방콕, 뉴델리

■ 치타공 공항

- 운영미숙으로 적자가 심각
- 타이항공에서 치타공 공항을 5년간 운영하는 계약이 협의 중이었으나 현 임시정부에서 계약을 파기

■ 주요 운영노선

- 한국과 직항 없음. 주로 방콕, 홍콩 및 싱가포르 등을 경유, 이외 Gulf, 두바이 등 중동항공사들이 취항 중.

항공사	약자	노선	운항횟수
태국항공	TG	다카 <-> 방콕	매일 1회
	TG	치타공 <-> 방콕	주 2회
싱가포르항공	SQ	다카 <-> 싱가포르	매일 1회
방글라데시	BG	다카 <-> 방콕	주 4일(화,금,토요일 제외)
드레곤항공	KA	다카 <-> 홍콩	주 4일 운항(수요일)
동방항공	KM	다카 <-> 곤명	주 4일 운항
말레이시아항공	KL	다카 <-> 쿠알라룸푸	주 4회

주: * 기타 중동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과 직항 연결됨

7.5 국제항구

외 항*	CHITTAGONG, MONGOLA
내 항	DHAKA, NARANYAGANJ, CHANDPUR 등

* 모두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대형 선박의 진입이 불가

■ 치타공 항만

방글라데시 제1의 항구로서 전체 수입물품의 80%, 수출물품의 75%를 처리하며, 나머지는 몽글라와 비나폴, 힐리 등 내륙항에서 처리하고 있음.

- Maersk, K-Line, OOCL 등의 세계적인 해운업체와 우리나라의 한진해운과 조양해운 등이 진출해 있으나, 대부분 방글라데시까지 직항로는 없고 싱가포르 등에서 환적함.
- 부산항-치타공간 실제 운송기간은 11~15일이면 치타공항만 적체와 세관행정 지연 등으로 보통 30일 이상 소요.(최근 기간 단축)
- 부산항-치타공 간 20피터 컨테이너 운송비용: 1,350달러.(2007년 6월 기준)
- 치타공-다카간 내륙운송비: 약 200~300달러. 소요 기간은 항만적체가 없을 경우 3~4일소요.

화주가 지불하지 않은 경비를 선사에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해적들이 출현하기도 하여 2004년 IMO에서는 치타공항을 가장 위험한 항구로 분류.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치타공항만의 물류서비스 개선을 위해 일명 DECC(Dhaka-Chittagong Economic Corridor Development)로 요약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치타공항만의 자동화, 추가 크레인설치, 주요 도시와의 연결도로 건설, 철도 추가 연결 및 고속화, 인근 항과의 고속페리운항, 그리고 Oil Tanker 근접을 위한 deep water 시설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이중 크레인만 추가(2005년 스미토모)설치되었음.

2007년 현 임시정부 들어 치타공 항만이 매우 효율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됨.



8.

성공사례 · 실패사례

- 8.1 주재국 시장 상황에 기초한 시장 개척 전략 성공사례
- 8.2 성공사례2(대림로얄보일러)
- 8.3 성공사례 2(썬스타)
- 8.4 실패사례



8. 성공사례 · 실패사례

8.1 주재국 시장 상황에 기초한 시장 개척 전략 성공사례

음료 생산설비 수출 전문 엔지니어링사인 국내 M산업은 방글라데시의 음료 시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방글라데시의 인구, 경제성장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방글라데시의 음료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 본격적으로 미시장 개척지인 방글라데시 진출에 돌입기로 결정.

M 산업은 우선 KOTRA를 통해 해외세일즈 지원 제도를 활용, 4일간 방글라데시에 체류 하면서, 음료 생산 업체 및 잠재 바이어와의 중점 상담. 이중 방글라데시 최대의 대기업 중 하나로 현지 독자 브랜드인 "RC 콜라"를 생산하는 PARTEX 그룹과 상담하던 중, 생산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함(당시 PARTEX 그룹의 생산라인은 미국에서 수입한 중고 기계 였으나 수리기술이 없어 50%만의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 발견)

이에 M산업이 공장을 방문하고 문제를 진단한 결과, 매우 사소한 기계의 결함으로 1-2일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문제였음. 국내 M산업은 원활한 의사소통은 물론 지속적인 시장정보와 시장개척을 위해 KOTRA 지사화사업에 참가하였으며, 이후 PARTEX 그룹이 생산라인을 대규모 증설 계획한다는 계획을 입수하고는 거의 원가에 가깝게 문제라인을 교체하여주는 동시에 한국에 초빙, 자사의 기존 생산라인을 견학, 동 바이어와의 신뢰 구축에 성공.

이후, US\$60만에 해당하는 "Bottling 생산라인 수출" L/C를 개설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방글라데시 시장개척에 자신감을 획득. 2-3개사와 추가 계약을 하게 되었다. 이는 단기 이익에 집착하지 않고 음료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는 정보에 의거한 현지 시장 진출 노력의 결실이자, 상대방과의 신뢰를 기초로 한 노력의 결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8.2 성공사례2(대림로얄보일러)

2000.6 월 방글라데시에서 최초로 개최된 다카한국상품전에 참가하여 바이어와의 상담결과 시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2001.7월부터 코트라 지사화 사업에 참가하여 세계최빈국 방글라데시는 그 이름에 걸맞게 중고보일러 거래가 많았고 수 차례 상담을 통해 거래가 성사될 만하면 막바지에 다소 수용하기 어려운 가격 디스카운트를 바이어가 요구하여 거래에 애를 먹었음.

방글라데시 첫 수출은 입찰참가로 성사. 치타공 소재 국영기업인 Standard Asiatic Oil Co., Ltd.가 2 톤 보일러 입찰참가하였고, Standard Asiatic 과 인맥관계가 있는 현지의 유력 바이어를 에이전트로 선정하여, 쟁쟁한 영국, 프랑스의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낙찰 및 최초 수출에 성공

마케팅 및 브랜드 인지도 확대하기 위하여 치타공에서 보일러 구매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엔지니어를 대상 설명회 개최하였고, 현지 유력일간지에 광고를 시행하고 현지 유력업체 약 1,600 개사에 C/L 을 발송하였음

선진국 제품과의 장단점 비교. A/S 등이 주요 구매요인

최근 산업용보일러 동향, 미국산 및 유럽산 제품과 비교 등에 바이어가 애프터서비스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중점을 두어 카탈로그, 영문 세미나자료, 기념품(회사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수록한 볼펜 세트), Powerpoint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서 애프터서비스 강점을 부각시킴

KOTRA 지사화 사업 부가서비스인 Sales Rep. 서비스 사업(연간 약 600 만 원) 참여하여 현지인 A/S 맨 발굴 및 무역관 상주 근무를 하는 등 현지 A/S 요원의 무역관 근무에 중점을 둠

이러한 노력으로 2002년에 15만 달러 2003년 32만 달러, 2004년 58만 달러를 각각 수출하였고 2005년 방글라데시 수출목표를 1백만 달러로 설정하였음

기존 중형 보일러 이외 소형 및 대형 보일러 시장 개척노력하고 있으며, 다카에 연락사무실 별도 마련하였으며 현재는 연 3백만 달러 이상 수출을 목표로 시장확대 경주중임

8.3 성공사례 2(썬스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봉제기업체로 방글라데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1백만 달러 달성하였음. 초기에는 중국 및 베트남 시장 공략에 초점이 맞추어져 방글라데시 시장은 한번 출장에 여러 에이전트들이 다양한 수요자를 연결하였으나 구심점이 되지 못하였음.

코트라 무역관 및 현지시장 조사를 통하여 방글라데시 봉제 시장의 폭발적인 증가세 확인하였고 바이어들은 에이전트보다는 한국업체를 선호하였음.

현지 진출후 과감한 마케팅 정책에도 불구하고 판매부진하였음. 방글라데시가 에이전트 시장임을 다시 실감하고 확실하고 명확한 에이전트 수수료체계를 보장하였음

한국인 상주 기술자 2 명의 탁월한 A/S 가 바이어를 감동시키자 기존 방글라데시에서는 볼 수 없는 A/S 로 친절하고 정확하다고 시장에서 소문이 나, 기존 에이전트 이외 많은 에이전트들이 오더를 가지고 사무실을 찾아옴

경쟁업체인 일본의 Juki, Brother 와는 진출시기가 10 년 이상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특유한 열정과 A/S 로 현지 신규시장의 50% 점유 육박하였고, Launching Ceremony, 주요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꾸준한 시장관리로 2007년 목표 1,500만 달러 달성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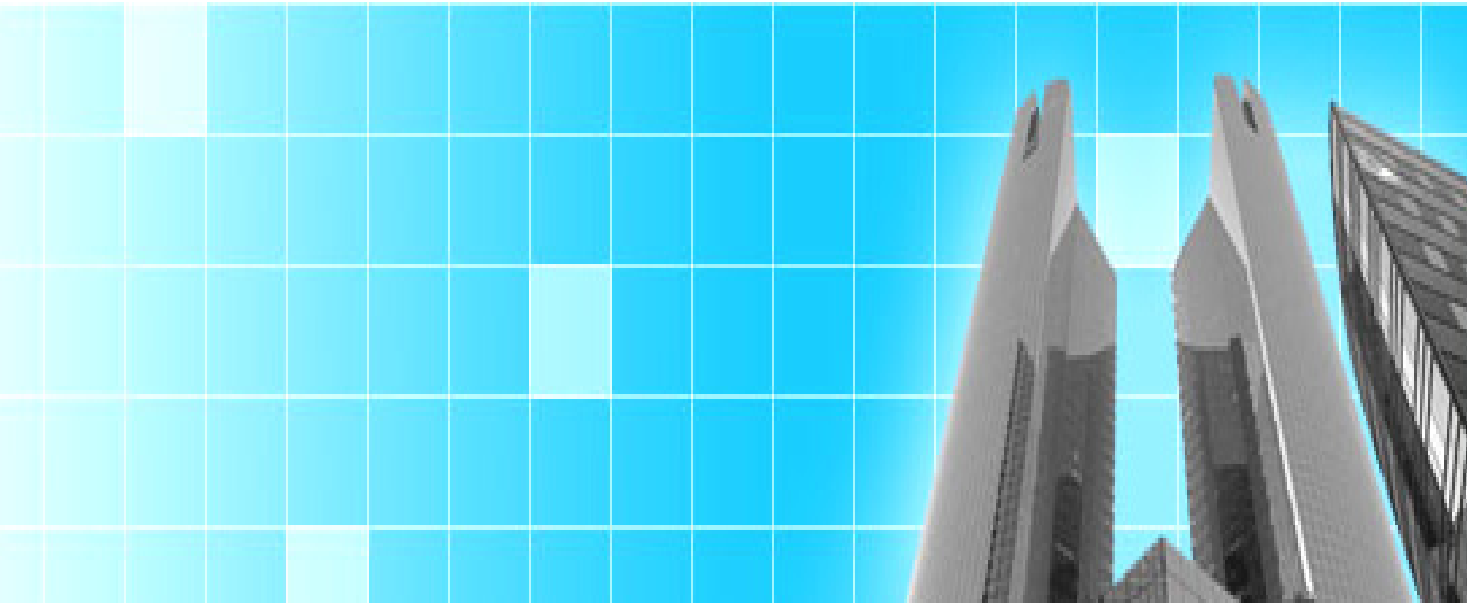
8.4 실패사례

작업용 가죽장갑 생산을 위해 투자한 한국 모 업체의 경우 현지에서의 고급 품질의 가죽원단 확보 곤란으로 최근 다른 업종으로 전환 및 일본업체는 같은 이유로 철수

모 가발업체의 경우 현지 관습상 모발의 현지 조달을 못해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으나, 세관통관에 어려움을 겪음

한국의 수출 에이전트에만 의존할 경우 안정적인 대금결제 및 의사소통 원할, 별도의 마케팅비용 절감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A/S 가 원할 하지 않아 오히려 평판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음.

또한 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일부 에이전트들에만 의존하여 시장선점 및 판매확대 기회를 놓치고 결국 경쟁업체에 밀려 시장에서 쫓겨남



부 록

1. 한-방글라데시 조세협약
2. 방글라데시 투자회사 현황

부록 1. 대한민국-방글라데시 조세협약

[1984.08.22]

1983년 5월 10일 서울에서 서명

1984년 8월 22일 발효

Signed at Seoul May 10, 1983

Entered into force August 22, 1984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984.08.22]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Desiring to conclude a Conventio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Have agreed as follows :

제1조 【인적범위】 [1984.08.22]

이 협약은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적용된다.

Article 1. 【Personal Scope】 [1984.08.22]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조 【대상조세】 [1984.08.22]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 1) 소득세
- 2) 법인세 및
-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한다)

나. 방글라데시에 있어서는
소득세

(이하 “방글라데시의 조세”라 한다)

Article 2. 【Taxes Covered】 [1984.08.22]

1. The taxes which are the subject of this Convention are:

(a) in the case of Korea:

- (i) the income tax;
- (ii) the corporation tax; and
- (iii) the inhabitant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n tax”);

(b) in the case of Bangladesh:
the income tax

(hereinafter referred to as “Bangladesh tax”)

2. 이 협약은 현행조세에서 추가하여 또는 현행조세를 대체하여 이 협약의 서명일 이

2.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후에 부과되는 동일한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양채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각국의 세법에 있었던 중요한 변화에 관하여 상호통지하여야 한다.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ignificant changes which have been made in their respective taxation laws.

제3조 【일반적 정의】 [1984.08.22]

1. 이 협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아래의 용어들은 각각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가. “한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나. “방글라데시”라 함은 방글라데시인민 공화국을 의미한다.

다. “일방채약국” 및 “타방채약국”이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 또는 방글라데시를 의미한다.

라. “조세”라 함은 문맥에 따라 한국의 조세 또는 방글라데시의 조세를 의미한다.

마. “인”이라 함은 개인, 법인 및 기타인들의 단체를 의미한다.

바. “법인”이라 함은 법인격있는 단체 또는 조세목적상 법인격 있는 단체로 취급되는 실체를 의미한다.

사. “일방채약국의 기업” 및 “타방채약국의 기업”이라 함은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 및 타방채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경영되는 기업을 각각 의미한다.

아. “국민”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일방채약국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984.08.2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b) the term “Bangladesh” means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c) the terms “a Contracting State” and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Korea or Bangladesh, as the context requires;

(d) the term “tax” means Korean tax or Bangladesh tax, as the context requires;

(e)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f)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which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g)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2) 일방체약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에 의하여 그러한 지위를 부여받은 법인, 조합 및 단체

차. “국제운수”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기가 타방체약국내의 장소에만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운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의미한다.

차. “권한있는 당국”이라 함은, 한국의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의미하며,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는 국가세입청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을 의미한다.

2. 일방체약국에 의한 이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이 협약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동용어가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와 관련된 동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s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nationals” means:

i) all individuals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ii) all legal persons, partnerships and associations deriving their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i)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j)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n the case of Korea, the Minister of Finance or his authorised representative; and, in the case of Bangladesh, the National Board of Revenue or its authorised representativ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at State concerning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제4조 【거주지】 [1984.08.22]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체약국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만은 동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동개인이 양체약국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동개인은 그와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한층 더 밀접한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나. 동개인이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개인은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다. 동개인이 양체약국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라. 동개인이 양체약국의 국민이거나 어

Article 4. 【Resident】 [1984.08.2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head or main offi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But the term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는 체약국의 국민도 아닌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동인은 동인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5조 【고정사업장】 [1984.08.22]

1. 이 협약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영위되는 고정된 사업장소를 의미한다.

2. “고정사업장”이라 함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관리장소
- 나. 지점
- 다. 사무소
- 라. 공장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In case of doubt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984.08.22]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 (a) a place of management;
- (b) a branch;
- (c) an office;
- (d) a factory;

- 마. 작업장
- 바. 타인을 위하여 보관시설을 제공하는
인과 관련된 창고
- 사. 광산, 유전 또는 개스천,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장소 또는 건설, 설비 또는 조립공사는 183일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이 된다.

4. 본조 전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다음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 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보관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시설의 사용
- 나. 보관 또는 전시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재고의 보유
- 다. 타기업에 의한 가공의 목적만을 위한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재고의 보유
- 라.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수집의 목적만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 마. 기업을 위한 광고, 정보의 제공, 과학적 연구 또는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갖는 유사한 활동만을 위한 사업상의 고정된 장소의 보유
- 바. “가”에서 “마”까지의 세항에서 언급한 활동의 복합된 활동을 위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보유. 다만, 그러한 복합으로 인한 고정된 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한다.

- (e) a workshop;
- (f) a warehouse, in relation to a person providing storage facilities for others: and
- (g)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installation or assembly project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it lasts more than 183day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or displa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or display;
-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advertising, for the supply of information, for scientific research or for similar activities which have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or the enterprise.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본조 전제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은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수시 인도를 위한 동기업에 속하는 시설의 사용 또는 동재화나 상품의 재고의 보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5.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the use of facilities or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for the purpose of occasional delivery of such goods or merchandise.

6.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 이외의 인이 일방체약국에서 타방체약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 동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동인이 동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동기업은 일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6.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7 applies is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if such a person:

가. 동인의 활동이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하여진다 할지라도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정된 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으로 되지 아니하는 동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 동인이 동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또 평소에 이를 행사하는 경우

나. 동인이 그러한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동기업을 대신하여 정기적으로 인도하는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동일방체 약국에 평소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a)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that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or

(b) has no such authority, but habitually maintains in the first-mentioned State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from which he regularly delivers goods or merchandise on behalf of the enterprise.

7. 기업이 일방체약국내에서 중개인, 일반 위탁매매인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인들이 그들의 사업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에 동기업은 동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8.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 또는 타방체약국에서(고정사업장을 통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동법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어느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고정사업장으로 되지는 아니한다.

8.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제6조 【부동산소득】〔1984.08.22〕

1. 타방채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농업 또는 임업소득을 포함한다)은 동타방채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채약국의 법에서 부동산이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 광천과 기타 자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불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이나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또는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된다.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1984.08.22〕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부동산으로부터의 기업의 소득 및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 부동산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제7조 【사업소득】 [1984.08.22]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타방체약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동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기업의 이윤은, 동이윤 중 동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타방체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고정사업장이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동고정사업장을 가지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운영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동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

Article 7. 【Business Profits】

[1984.08.22]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행정비를 포함하여 동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내에서 발생하였는지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하였는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기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상품을 단순히 구입하는 이유만으로는 동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은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제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조항의 제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determining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4. No profits shall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or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5.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6.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제8조 【해운 및 항공운수】〔1984.08.22〕

1. 국제운수상 항공기를 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국제운수상 선박의 운행으로 타방체약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동소득에 대하여 동타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동조세의 5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경감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공동계산, 공동사업 또는 국제경영체에의 참가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된다.

4.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수행하는 국제운수상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동기업이 방글라데시의 기업인 경우에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로부터 면제되고, 동기업이 한국의 기업인 경우에는 방글라데시에서 장차 부과될 수 있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로부터 또한 면제된다.

Article 8. 【Shipping and Air Transport】

〔1984.08.22〕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operation of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d from the operation of ships in international traffic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but the tax chargeable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n such income shall be reduced by an amount equal to fifty per cent of such tax.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also apply to profits derived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4. In respect of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carried on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hat enterprise, if an enterprise of Bangladesh, shall also be exempt from the value added tax in Korea and, if an enterprise of Korea, shall also be exempt from any tax similar to the value added tax in Korea which may hereafter be imposed in Bangladesh.

제9조 【계열기업】 [1984.08.22]

가.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나. 동일인들이 일방체약국의 기업 및 타방체약국의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또한 두 경우중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양기업간에 상업상 또는 자금상의 관계에 있어 독립적인 양기업간에 설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에는, 동 조건이 없었더라면 일방기업의 이윤이 되었을 것이 그러한 조건들 때문에 그와같이 발생하지 않았던 이윤은 동기업의 이윤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984.08.22]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제10조 【배당】 [1984.08.22]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에서도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0. 【Dividends】 [1984.08.22]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나, 수취인이 동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와 같이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조합은 제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0퍼센트

나)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분량은 동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10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본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 광업권주, 말기인주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기타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또한 분배를 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계약국의 세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의 소득과 동일한 과세취급을 받는 기타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mining share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일방계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동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타방계약국에서 동타방계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타방채약국에서 동타방채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동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각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채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그 법인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이나 동법인의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타방채약국에서 발생한 이윤이나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배당이 동타방채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동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주식지분이 동타방채약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타방채약국은 동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또한 동법인의 유보이윤을 동법인의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제11조 【이자】 [1984.08.22]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는 동이자 발생하 는 체약국에서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또한 과세될 수 있으나 만약 수취인이 동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이자의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를 포함한 동타방체약국의 정부 또는 동타방 체약국의 중앙은행에 의하여 수취되는 이 자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 한다.

나.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의하여,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경우에는 방 글라데시 은행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보증 되는 차관 또는 여신에 관하여 일방체약국 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 서만 과세된다.

다.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와 관련하여 지급된 이자 및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상품의 신용판매와 관 련하여 지급한 이자는 수혜자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rticle 11. 【Interest】 [1984.08.22]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a)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received by the Governm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or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b)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loans or credits made or guaranteed,

- in the case of Korea, by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 in the case of Bangladesh, by the Bangladesh Bank;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c) interest pai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n credit of any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paid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n credit of any merchandise by one enterprise to another enterpris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beneficiary is a resident.

4. 본조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참여할 권리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발행 유가증권 또는 사채로부터의 소득과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금전의 대부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다른 소득을 의미한다.

4.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profits, and debt-claims of every kind as well as all other income assimilated to income from money lent according to the taxation law of the State in which the income arises.

5.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가 동이자 발생처가 타방채약국에서 동타방채약국내에서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동타방채약국에서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독립된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동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각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2 and 3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6.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채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이자는 동채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채약국내에 그 이자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이자가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는 그 고정사업장 혹은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채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3자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금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한 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후자의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타당한 고려를 하여 각 채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다.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6.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7.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제12조 【사용료】 [1984.08.22]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또한 동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 있어서 “사용료”라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모형,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그리고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로서 사용료의 수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12. 【Royalties】 [1984.08.22]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익적 소유자가 동사용료가 발생하여 타방
 체약국내에서 동타방체약국내에 있는 고정
 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동타
 방체약국내에서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
 여 동타방체약국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동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
 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
 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이 해당되는 각 경우에 따라 적용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또는, 동일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
 방공공단체 또는 거주자일 경우에는 동일
 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동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동인이 일
 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
 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사용료가 그 고정
 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동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that State itself, a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obligation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의 또는 그들 양자와 제3자 사이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할 때,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조의 규정은 그 후자의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에 대한 타당한 고려를 하여 각 계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that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제13조 【양도소득】 [1984.08.22]

1.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양도 또는 자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는 양도소득은 그러한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3. 【Capital Gains】 [1984.08.22]

1. Capital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or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in a company the assets of which consist principally of immovable property, may be taxed in the State in which such property is situated.

2. 일방계약국의 기업이 타방계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일방계약국의 거주자가 타방계약국내에서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과 관련된 동산의 양도로부터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 (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 시설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3.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행에 부수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거주자가 되는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한다.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or aircraf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enterprise is a resident.

4.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재산 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의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로 되는 체약당사국에서만 과세한다.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and 3,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 [1984.08.22]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4.08.22]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행위와 관련하여 얻은 소득은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independent activities of a similar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채약국에서 수행한 전문직업적인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 성격의 행위와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타방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동거인이 당해 과세연도 중 총 120일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동타방채약국에 체류하거나, 또는

나. 동개인이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동타방채약국내에서 동인에게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동고정시설에 귀속시킬 수 있는 만큼의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3. “전문직업적인 용역”이라 함은 의사, 변호사, 기사,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 활동외에도 특히 독립적인 학술, 문화, 예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종속적 인적용역】 [1984.08.22]

1.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채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임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보수는 그 고용이 타방채약국내에서 수행되지 아니하는 한, 동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만약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n individual who is a resident of a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independent activities of a similar character performed in the other State may also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if:

(a) the individual is present in that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exceeding in the aggregate 120 days in the taxable year concerned, or

(b) the individual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3.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984.08.22]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19, 20 and 21,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그 고용이 타방채약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그러한 보수는 동타방채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채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채약국내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보수는 다음의 경우에 동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된다.

가. 그 수취인이 당해 회계연도 중 합계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일기간 또는 제기간동안 동타방채약국내에 체재하며

나. 그 보수가 동타방채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또는 동고용주를 대신하여 지급되고, 또한

다. 그 보수가 동고용주가 타방채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이나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본조의 전규정들에 불구하고 일방채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국제운수에 운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수는 동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the taxable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제16조 【이사의 보수】 [1984.08.2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자격으로 취득하는 이사수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Article 16. 【Directors' Fees】

[1984.08.22]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 [1984.08.22]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연극, 영화,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예능인 또는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그의 그와 같은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Article 17. 【Artistes and Athletes】

[1984.08.22]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n athlete,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동인의 그와 같은 자격으로 수행하는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동연예인이나 체육인 자신에게 발생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발생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하여는 제7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n athlete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athlete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athlete are exercised.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을 방문하는 것이 타방채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법적 단체의 공공기금을 포함한 동타방채약국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동일방채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얻는 보수 또는 이익, 급여, 임금 및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활동과 관련한 비영리단체의 소득에 대하여 동소득의 어떠한 부분이 동단체의 소유자, 구성원 또는 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지급되거나 달리 이용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8조 【연금】 [1984.08.22]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에게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한 연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동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된다.

제19조 【정부용역】 [1984.08.22]

1. 가. 일방채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동일방채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이외의 보수는 동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나. 그러나 그러한 보수는 만약 그 용역이 타방채약국내에서 제공되고 개인이 동타방채약국의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인 경우에는 동일방채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nd 2 shall not apply to remuneration or profits, salaries, wages and similar income derived from activities performed in a Contracting State by entertainers or athletes if their visit to that State is substantially supported from the public fund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those of any political subdivision, a local authority or statutory body thereof, nor to income derived by a nonprofit making organization in respect of such activities provided no part of its income is payable to, or is otherwise available for the personal benefit of its proprietors, members or shareholders.

Article 18. 【Pensions】 [1984.08.2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984.08.22]

1. (a) Remuneration, other than a pens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 1) 동타방체약국의 국민인 자, 또는
- 2) 오직 그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만 동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되지 아니한 자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i)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ii)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가. 일방체약국 또는 동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또는 이들에 의하여 설립된 기금으로부터 동일방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나. 그러나 개인이 타방체약국의 국민이고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러한 연금은 동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2. (a) Any pens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제15조,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은 일방체약국 또는 동일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의하여 영위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보수 및 연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and 18 shall apply to remuneration and pensions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4. 본조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및 기타 정부소유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경우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likewise apply in respect of remuneration or pensions paid, in the case of Korea, by the Bank of Korea, the Export-

에는 방글라데시 은행 및 기타 정부소유기관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수 또는 연금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Import Bank of Korea, the Korea Exchange Bank, the Korea Trade Promotion Corporation and other government-owned institutions and, in the case of Bangladesh, the Bangladesh Bank and other government-owned institutions.

제20조 【학생 및 훈련생】 [1984.08.22]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또는 일방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었던 개인이 동일방체약국내에 있는 인가된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인가된 교육기관의 학생으로서 또는 사업 또는 기술훈련생으로서 동일방체약국내에 첫 도착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동일방체약국에서 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동개인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하여 해외로부터 지급되는 모든 지급금 및

나.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그에게 이용가능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동일방체약국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에 대한 보수

Article 20. 【Students and Apprentices】 [1984.08.22]

1. An individual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as a student at a recognized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recognised educational institution in the first-mentioned State or as a business or technical apprentice therein, for a period not exceeding five year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e first mentioned State in connection with that visit,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first mentioned State on:

(a) all remittances from abroad for the purposes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and

(b) any remuneration for personal services render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with a view to supplementing the resources available to him for such purposes.

2. 타방채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이었으며 학술, 교육, 종교 또는 자선기관으로부터 또는 일방채약국의 정부에 의해서 시행되는 기술지원계획에 의하여 지급되는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의 수취인으로서 연구, 조사 또는 훈련만의 목적으로 동방문과 관련하여 동타방채약국에서 처음 도착한 날로부터 동타방채약국 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개인은 다음에 대하여 동타방채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가. 그러한 교부금, 수당 또는 장려금

나. 동개인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을 위하여 해외로부터 지급되는 모든 지급금

2. An individual who wa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visiting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s temporarily present in that other State solely for the purposes of study, research or training as a recipient of a grant, allowance or award from a scientific, educational, religious or charitable organization or under a technical assistance programme entered into by the Governm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from the date of his first arrival in that other State in connection with that visit,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State:

(a) on the amount of such grant, allowance or award; and

(b) on all remittances from abroad for the purposes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제21조 【교직자】 [1984.08.22]

일방채약국거주자이거나 또는 타방채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이었던 자로서 동타방채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학교, 대학, 학교 또는 기타 유사한 교육기관의 초청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러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 또는 이 양자의 목적만을 위하여 동타방채약국을 방문하는 개인은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에 대한 그의 보수에 대하여 동타방채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Article 21. 【Teachers】 [1984.08.22]

An individual who is or wa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mmediately before making a visit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at the invitation of any university, college, school or other similar educational institution, which is recogn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visits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not exceeding two years solely for the purpose of teaching or

제22조 【기타소득】 [1984.08.22]

1. 소득의 발생지를 불문하고 이 협약의 전 각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동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협약의 전 각 조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일방체약국거주자의 소득은 동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제23조 【이중과세회피방법】 [1984.08.22]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해야 할 조세의 한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이에 관한 일반적 원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방글라데시와 한국 양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어 왔던 방글라데시내의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든지 또는 공제에 의하여든지, 방글라데시법 및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방글라데시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납부세액을 제외한다)는 동소득에 대하여

research or both at such educational institution shall be exempt from tax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n his remuneration for such teaching or research.

Article 22. 【Other Income】

[1984.08.22]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and arising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Article 23. 【Methods for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1984.08.22]

1.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Korea,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Korean tax law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Korea(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hereof) the Bangladesh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a dividend,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에 대한 공제로서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는 방글라데시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한국의 조세에 과세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dividend is paid) under the laws of Bangladesh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Bangladesh which has been subjected to tax both in Bangladesh and Korea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Korean tax payable in respect of that income. The credit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roportion of Korean tax which the income from sources within Bangladesh bears to the entire income subject to Korean tax.

2. 제1항의 목적상, “납부하여야 할 방글라데시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 중인 방글라데시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방글라데시법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되는 한에서 동법을 수정하거나 또는 동법에 추가하여 방글라데시에서 추후 도입될 수 있는 여타의 규정에 의거하여, 방글라데시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다면 방글라데시의 세법에 따라 납부하였을 방글라데시의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조항에서 언급된 조세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 the term “Bangladesh tax payable”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amount of Bangladesh tax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in accordance with Bangladesh tax laws but for the exemption or reduction of Bangladesh tax in accordance with the Bangladesh laws relating to incentives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in Bangladesh which were in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or any other provisions which may subsequently be introduced in Bangladesh in modification of, or in addition to, those laws so far as they are agre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 to be of a substantially similar character: Provided that the amount of the tax referred

가. 배당의 경우, 제10조 제2항 “가”에 규정된 배당은 그 배당총액의 10%의 금액, 제10조 제2항 “나”에 규정된 배당은 그 배당총액의 15%의 금액

나. 이자의 경우, 그러한 이자총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용료의 경우,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to in this paragraph shall not, however, exceed:

(a) in the case of dividends an amount equal to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dividends in the case of dividends referred to in paragraph 2 (a) of Article 10 and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dividends in the case of dividends referred to in paragraph 2 (b) of Article 10;

(b) in the case of interest an amount equal to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interest; and

(c) in the case of royalties an amount equal to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3. 방글라데시의 거주자인 경우에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방글라데시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방글라데시의 조세에 대한 세액 공제에 관한 방글라데시 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이에 관한 일반적원칙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한국과 방글라데시 양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어왔던 한국내의 원천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하여, 방글라데시의 거주자가 직접으로든지 또는 공제에 의하여든지 한국법 및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납부세액을 제외한다)는 동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방글라데시의 조세에 대한 공제로서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는 한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방글라데시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3. In the case of a resident of Bangladesh, double taxation shall be avoided as follow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law of Bangladesh regarding the allowance as a credit against Bangladesh tax of tax payable in any country other than Bangladesh, (which shall not affect the general principle thereof), the Korean tax payable (excluding in the case of dividends, tax payable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 is paid) under the law of Korea and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whether directly or by deduction, by a resident of Bangladesh in respect of income from sources within Korea which

차지하는 방글라데시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3항의 목적상,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라 함은,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 중인 한국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한국법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양채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합의되는 한에서 동법을 수정하거나 또는 동법에 추가하여 한국에서 추후도입될 수 있는 여타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조세의 면제나 경감에 없었던 한국 조세액에 따라 납부하였을 한국의 조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단, 이 조항에서 언급된 조세액은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배당의 경우, 제10조 제2항 a)에 규정된 배당은 그 배당총액의 10%의 금액, 제10조 제2항 b)에 규정된 배당은 그 배당총액의 15%의 금액

나. 이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이자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 사용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has been subjected to tax both in Korea and Bangladesh shall be allowed as a credit against Bangladesh tax payable in respect of such income, but in an amount not exceeding that proportion of Bangladesh tax which such income bears to the entire income chargeable to Bangladesh tax.

4.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the term “Korea tax payable”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amount of Korean tax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in accordance with Korean tax laws but for the exemption or reduction of Korean tax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laws relating to incentives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which were in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of this Convention or any other provisions which may subsequently be introduced in Korea in modification of, or in addition to, those laws so far as they are agre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to be a substantially similar character: Provided that the amount of the tax referred to in this paragraph shall not, however, exceed:

(a) in the case of dividends an amount equal to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dividends in the case of dividends referred to in paragraph 2 (a) of Article 10 and

제24조 【무차별】 [1984.08.22]

1. 일방체약국의 국민은 동일한 사정하에 있는 타방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은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인에게도 역시 적용된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동일한 활동에 종사하는 동타방체약국의 기업에게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동타방체약국내에서 부과되지 아니한다. 본규정은 일방체약국이 그 시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가족부양책임으로 인하여 자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인적공제,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dividends in the case of dividends referred to in paragraph 2 (b) of Article 10;

(b) in the case of interest an amount equal to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interest; and

(c) in the case of royalties an amount equal to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such royalties.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1984.08.22]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구제 및 경감을 타방채약국의 거주자에게 부여하여야 할 의무를 일방채약국에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3. 제9조, 제11조 제7항 또는 제12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채약국의 기업에 의하여 타방채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은 동기업의 과세이윤결정의 목적상, 동이자, 사용료 및 기타 지급금이 일방채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 이 항의 규정은 이자, 사용료, 기타 지급금에 대한 원천징수조세의 공제를 공제의 조건으로 하고 있는 방글라데시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그 자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채약국의 일인 또는 그 이상의 거주자에 의하여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일방채약국의 기업은 동일방채약국의 다른 유사한 기업이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부담할지도 모를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과 다르거나 또는 그보다 더 과중한 과세 또는 이와 관련된 요건을 동일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3.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Article 9, paragraph 7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The provision of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Bangladesh requiring the deduction of tax at source from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as a condition for deduction.

4.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방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5. 본조의 규정은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모든 종류 및 각칭의 조세에 적용된다.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제25조 【상호합의절차】 [1984.08.22]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1984.08.22]

1. 어떤 인이 일방 또는 양체약국의 과세 처분이 동인에 대하여 이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상의 결과를 가져 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동인은 양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라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 또는 만일 그의 사건이 제24조 제1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가 국민으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의 사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사건은 이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를 발생시킨 처분을 최초로 인지한 날로부터 3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그 권한있는 당국이 스스로 만족할만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권한있는 당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국은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방채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된 사항은 양채약국의 국내법상의 시한에 불구하고 시행된다.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양채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곤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그들은 또한 본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하여 상호협의를 할 수 있다.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양채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전 각 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직접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구두로 의견을 상호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이러한 의견교환은 양채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할 수 있다.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When it seems advisable in order to reach agreement to have an oral exchange of opinions, such exchange may take place through a Commission consisting of representative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제26조 【정보교환】 [1984.08.22]

Article 26. 【Exchange of

1.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본협약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또는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본협약에 배치되지 않은 한에 있어서, 본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양체약국의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이 입수하는 모든 정보는 동일방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되는 정보와 마찬가지로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 또는 강제집행이나 소송 또는 소원의 결정에 관련된 인 또는 당국(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포함함)에 대하여서만 공개된다. 그러한 관련자나 당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만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재판절차나 사법적 결정에 있어서 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동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과 행정상의 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상의 조치를 수행하는 것

Information】 [1984.08.22]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 1. Any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at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involved in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2.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나. 동일방체약국 또는 타방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또는 행정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다. 무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또는 전문직업상의 비밀 또는 거래의 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공공정책에 배치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제27조 【외교관 및 영사관】 [1984.08.22]
이 협약의 여하한 규정도 국제법이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거한 외교관 또는 영사관의 과세상의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Article 27.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Officers】 [1984.08.22]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affect the fiscal privileges of diplomatic agents or consular officers under the general rules of international law or under the provisions of special agreements.

제28조 【발효】 [1984.08.22]

1.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가능한한 조속히 다카에서 교환된다.

Article 28. 【Entry into Force】 [1984.08.22]

1. 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Dhaka as soon as possible.

2. 이 협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2.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thirtieth day after the date of exchange of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3.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한다.

3. This Convention shall have effect:

가. 한국에 있어서는:

- 1) 원천징수하는 조세는 서명한 해의 1월 1일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
- 2) 기타 조세에 있어서의 서명한 해의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

나. 방글라데시에 있어서는:
서명한 해의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부과연도

(a) in Korea:

(i)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of the signature; and

(ii) in respect of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of the year of the signature;

(b) in Bangladesh:
for any year of assessment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uly of the year of the signature.

제29조 【종료】 [1984.08.22]

이 협약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가지나 각 계약국은 비준서가 교환된 역년으로부터 5 번째 연도 다음의 어느 역년의 6월 30일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계약국에 서면으로 종료통고를 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이 협약은 다음에 대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 1) 원천징수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동통고가 있는 역년의 익년 1월 1일 이후에 비거주자에게 지급 또는 대기되는 금액
- 2) 기타 조세에 대하여는 동통고가 있는 역년의 익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되는 연도

나. 방글라데시에서는:
동통고가 있는 역년의 익년 7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부과연도

Article 29. 【Termination】 [1984.08.22]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but either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on or before the thirtieth day of June in any calendar year from the fifth year following that in which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have been exchanged, give to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and, in such event, this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

a) in Korea:

(i) in respect of tax withheld at the source on amounts paid or credited to nonresidents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and

(ii) in respect to other taxes for

taxation years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anuar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b) in Bangladesh for any year of assessment beginning on or after the first day of July in the calendar year next following that in which the notice is given.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by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have signed this Convention.

1983년 5월 10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Done in duplicate in this day of the yea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eighty in the English language.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정부를 위하여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부록 2. 방글라데시 현지투자 현황(2008.3월 현재)

(단위: 건, 천US\$)

현 지 법 인 명	신고 건수	신 규 법인수	신고금액	투자 건수	투자금액
	323	150	411,017	417	171,804
MERIMO LTD	8	1	61,995	22	7,540
SGWICUS BANGLADESH LTD.	7	1	43,470	10	8,270
DAEYU BANGLADESH LTD.	3	1	29,987	9	4,900
TITAS SPORTSWEAR INDUSTRIES LTD.	3	1	18,000	2	8,200
LALMAI SPORTSWEAR INDUSTRIES LTD	6	1	17,900	3	7,800
YOUNGONE SPORTSWEAR (CEPZ) LTD.	5	1	15,140	3	8,070
YOUNGONE HI-TECH SPORTS WEAR INDUSTRIES LTD.	3	1	13,005	3	13,005
JINWOONG B.D. LIMITED	1	0	12,246	0	0
YOUNGONE (CEPZ) LTD.	7	1	12,040	15	11,998
SAVAR DYEING & FINISHING IND.LTD.	3	1	10,047	2	5,524
KOREAN EPZ CORPORATION (BD) LTD.	1	1	10,000	1	10,000
INNO DEVELOPMENT LIMITED	1	0	9,800	0	0
A-ONE (BANGLADESH) LTD.	2	1	9,432	3	302
KARNAPHULI SPORTSWEAR INDUSTRIES LTD.	4	1	9,000	4	8,100
DADA (DHAKA) LTD.	4	1	8,642	3	1,876
GOORYONG(BD) TEXTILE LTD.	3	1	7,825	2	3,500
DADA (SAVAR) LTD.	9	1	7,119	11	7,119
YOUNGONE SPORTS SHOES INDUSTRIES LTD.	2	1	7,000	2	4,500
YOUNGONE SYNTHETIC FIBER PRODUCTS INDUSTRIES LTD.	4	1	6,643	3	5,571
YOUNGONE SHOES ACCESSORIES INDUSTRIES LTD.	2	1	4,500	2	1,800
TAEHUNG PACKAGING BANGLADESH LTD.	10	1	4,054	19	2,744

GH HAEWAE CO., LTD.	4	1	4,050	9	2,700
HYOPSHIN CO.,LTD.	1	1	3,800	3	2,126
KOLON BENGAL LTD.	1	0	3,500	0	0
HYUNDAI CEMENT (BANGLADESH)CO.,LTD	1	1	3,000	1	3,000
K&K TOPS TEXTILES COMPANY LIMITED	1	1	2,759	2	200
SIR JUNE(BD)CO., LTD.	2	1	2,752	6	234
IL KWANG CO., LTD.	4	1	2,655	16	1,383
SUNGNAM TEXTILE MILLS LIMITED	2	1	2,500	2	2,500
CHUN JI INDUSTRIAL CO.,LTD	2	1	2,500	3	2,000
CENTURY A.C BANGLADESH CO., LTD.	1	1	2,492	1	50
NEW TOWN KNITWEAR CO.	3	1	2,485	6	1,832
YOUNGONE GARMENT ACCESSORIES INDUSTRIES LTD.	3	1	2,360	2	1,430
A-ONE (BD) LTD.	3	1	2,300	17	1,141
SWAN LON COMPANY LTD.	5	1	2,197	6	2,065
KANGBOOK CO.,(BANGLADESH) LTD.	6	1	2,000	10	1,541
YOUNGAN HAT(BD) LTD.	2	1	1,900	2	976
U-JIN ELECTRONICS(B.D) CO., LTD.	2	1	1,697	5	977
PACIFIC ZIPPER (BANGLADESH) LTD.	2	1	1,500	4	1,500
YOUNG INTERNATIONAL BANGLADESH LIMITED	2	1	1,500	2	1,500
DHAKAREA. LTD.	2	1	1,500	5	970
YOUNGONE PADDING (CEPZ) LTD	3	1	1,250	3	1,250
BANG JIN (BANGLADESH) LTD	3	1	1,203	4	1,033
JASON INDUSTRIES (BD), LTD	1	1	1,200	3	700
SUNBANGLA PULP & PAPER MFG. LTD	1	0	1,190	0	0

현 지 법 인 명	신고 건수	신 규 법인수	신고 금액	투자 건수	투자 금액
HHH ACCESSORIES INDUSTRY LIMITED	2	1	1,100	6	580
BANGLADESH-KOREA POULTRY & FISH FEED MILLS LTD	1	1	1,064	1	300
JUNG WOO INTERNATIONAL LTD.	2	1	1,050	3	103
COORYONG BANGLADESH LTD.	1	1	1,041	2	1,041
SEA SEOLIM SURIMI LTD.	1	1	1,000	1	830
NEW STAR ORIENTAL LTD.	1	0	1,000	0	0
HANA PLASTIC(BD)LTD.	2	1	1,000	1	13
D & S MODE(BD),. LTD.	1	1	1,000	3	675
SEALIM TRADING CO., LTD.	1	1	1,000	7	1,000
HYOSUNG INDUSTRIAL DHAKA PVT.LTD.	1	0	1,000	0	0
CHUNJI KNIT LTD.	2	1	900	2	900
FINE TREE INDUSTRIES, LTD.	1	1	900	1	518
MIRAE COMPANY LIMITED.	2	1	894	1	746
YOULON PLASTIC(PVT) LIMITED	1	1	765	1	558
SAM REE DYEING (BD) LTD.	1	1	762	1	227
DAEJOON (BANGLADESH) LTD.	2	1	600	2	330
SEOUL INTERNATIONAL (DHAKA) LTD	1	0	600	0	0
NEW STAR HI-LON CO., LTD.	2	1	600	5	400
JMI-BANGLA CO., LTD.	1	0	595	0	0
ORIENTAL INDUSTRIAL CO., LTD.	1	1	550	1	550
POONGHAN PLASTIC BD. LTD.	1	1	550	6	194
TEESTA HIGH-FASHION LTD.	1	1	500	1	500
LIM'S(BD) LIMITED	1	0	500	0	0
ADVANCED-LEEWOO CONSTRUCTION COMPANY LIMITED	1	1	500	1	200

MAI KANG DREAM TEX LTD	1	1	500	3	142
SHYMS FASHIONS LTD.	4	1	477	5	438
SIN SIN (DHAKA) LTD.	3	1	450	4	321
GAVANCE LEATHER(BD) LTD.	1	1	450	2	150
CERAGEM BANGLADESH LTD	1	1	450	1	450
KIMS CORPORATION LTD.	2	1	410	3	410
K&B ENGINEERING COMPANY(BD) LTD.	2	1	400	3	332
VALIO SHOE INDUSTRY LTD	1	1	400	1	100
COSMIC TEXTILE AND DYEING (PVT) LTD.	1	0	375	0	0
FUJI BANGLA INTERNATIONAL CO., LTD.	1	1	372	1	372
B.K CO.	2	1	368	2	319
DONGBANG FACILITIES (BD) LTD.	1	1	360	1	360
SOME LEE(BD) LTD.	1	0	350	0	0
SE JONG CO., LTD.	1	1	350	1	12
S&C CORPORATION LTD.	1	1	300	1	100
DESMA SHOE INDUSTRIES LTD.	1	1	300	1	300
DOORY EMBROIDERY LTD	1	1	300	5	103
DESH-CO LTD	1	0	290	0	0
LEE RA TRADING(DHAKA) LTD.	2	1	280	3	209
MEENHAR SPORTS SHOES LTD.	2	1	270	2	258
HAN A HATS & CAPS LTD.	2	0	263	0	0
SHINYANG ALI CHEMICAL CO.,LTD	1	0	260	0	0
DONG KGI LTD	1	0	256	0	0
FASHION EXPRESS LTD.	1	0	255	0	0
DONGCHANG (DHAKA) LTD.	1	1	253	1	223

현 지 법 인 명	신고 건수	신 규 법인수	신고금액	투자 건수	투자금액
K. B. CORPORATION	1	0	251	0	0
KOREA-BANGLADESH FOOD PRODUCT LTD	1	1	250	1	10
KB TECHNOLOGY CORPORATION LTD.	1	0	245	0	0
BANGLADESH TAISUNG FILTERCO.,LTD	1	0	240	0	0
SUNGJIN (BANGLADESH) LTD	4	1	230	2	104
K.B.INTERNATIONAL LIMITED	1	0	230	0	0
HAN YANG INK (BANGLADESH) LIMITED	2	1	215	2	121
KHANDAKER AND SUNGHWA CO.	2	1	212	3	212
NEO ZIPPER COMPANY LIMITED	1	1	203	1	203
DAEWOO (BANGLADESH) CO.,LTD.	1	1	200	1	200
SAVAR SPORTSWEAR COMPANY LTD	1	1	200	1	100
PAXKO LIMITED	1	1	200	1	200
CHUNJI-A SWEATER LTD.	1	0	200	0	0
MALIM BANGLADESH CO., LTD.	1	1	200	4	200
KOREA BANGLA IT LTD.	1	1	200	4	19
HIFIVE AGRO LTD.	1	1	200	1	75
RASHID AND KUN HWA IND.CO.,LTD.	1	1	196	1	196
KUNHWA BANGLADESH CO.,LTD.	2	0	176	0	0
NEO BOX BD LIMITED	3	1	166	3	166
SHINIL BIOVET CO., LTD.	1	1	160	1	50
KHAN ENGINEERING ASSOCIATES & JIN SUNG CO.,LTD.	1	0	157	0	0
PADMA CONCRETE CO.,LTD.	1	1	153	1	102
FINE TREE BANGLADESH CO.	1	1	150	2	107
SAMCHUCK MORDERN POULTRY CO., LTD.	1	1	150	1	50

CLIFTON DYEING & PRINTING MILLS LTD.		1	0	150	0	0
IL KWANG CO., LTD.		1	1	150	1	50
미정		1	1	150	1	76
RAHMAN KUN HWA & COMECO CORP.		2	1	147	2	147
M/S AL-NOMAN KORE FURNITURES		1	1	135	1	135
CHERRY BRO ASHA POULTRY CO.		1	1	120	3	120
MYUNGSUNG RUPA PLASTIC CO.		1	1	120	1	50
TENSY FASHION LTD		1	0	119	0	0
OHMIE FASHION JEWELRY LTD.		1	1	113	1	30
SEVEN STAR & HANIL CO.,LTD.		1	0	112	0	0
SAM CHANG PIPE CO.,LTD.		1	1	107	1	107
IMPAX PIPE LTD.		2	1	105	2	105
SUNDORBAN JOIN DYEING CO.		1	1	104	1	50
KYUNG SHIN SEUMYU CO.LTD.		1	1	102	1	30
DHAKA PIPE FACTORY INC.		1	1	102	1	102
SECHANG VIP GARMENT CO.,LTD.		1	1	102	1	102
NOORJOO RESINE CO.,LTD.		1	1	102	1	102
DELTA CONCRETE CO.,LTD.		1	1	102	1	102
SIPHON PIPE FACTORY LTD		1	1	102	1	102
PADOG CONCRETE CO.,LTD.		1	1	102	1	102
ACE DELWAR DYEING CO.,LTD.		1	1	102	1	102
ANWAR PIPE FACTORY LTD.		1	1	102	1	102
IVORY LIGHTING LTD.		1	0	101	0	0
COMILLA BONGSAN METAL CO.		1	0	100	0	0
COUNTRY WOOSUNG LEATHER CO.		1	1	100	1	47

현 지 법 인 명	신고 건수	신 규 법인수	신고금액	투자 건수	투자금액
JEYANG (B.D) CO.,LTD	1	0	100	0	0
DELTA POLYCAST CO.	1	0	100	0	0
DISHA WOLKOA CO.,LTD.	1	1	100	1	50
SHINE EMBROIDERY LTD.	1	0	100	0	0
NICE DEVELOPER CO., LTD.	1	1	100	1	50
KABIR AND KIM PLASTIC INDUSTRISE LTD	1	1	100	6	31
SUH SUNG IL	1	1	100	1	100
CAS SCALE(BD) PVT LTD	1	1	100	1	100
GREEN ELECTRONICS LTD.	1	1	100	1	100
ALEEF FOOD TAEHWA FOOD CO.,LTD.	1	1	97	2	97
YOUNGONES(BANGLADESH) LTD.	1	1	92	1	92
HAMID FASHION LTD.	1	1	82	1	50
TOMCO, LTD.	1	1	80	1	66
DUKEUN INDUSTRY (BANGLADESH) LTD.	1	1	78	1	78
BANGLADESH KOREA BRICK COMPANY LTD.	1	0	77	0	0
SAMSUNG SERVICES(BANGLADESH) LTD	1	1	70	1	25
MRT EWHA CO.,LTD	1	1	70	1	30
BOWON (BD) LTD	1	1	70	1	70
KEUM NAM FASHIONS(BD) LTD.	1	0	60	0	0
SEA YANG CO.,LTD	1	0	60	0	0
CHUL WON INDUSTRIAL CO.,LTD	1	0	60	0	0
SAMSUNG INDUSTRY CO.,LTD.	1	1	60	1	60
SAMATA P.V.C. PIPE PRODUCTS	1	1	60	1	40
TAEHEUNG BANGLADESH LTD.	1	1	54	1	50

JOY DHAKA PLASTIC INC.	1	0	53	0	0
KYUNG SUNG INDUSTRY LTD.	1	0	50	0	0
SUNGHO ENGINEERING CO., LTD.	1	0	50	0	0
HYO CHANG LEATHER IND. CO.,LTD	1	0	50	0	0
YANG JIN INDUSTRIAL CO.,LTD	1	0	50	0	0
KWANG JU BRICK CO.,LTD	1	0	50	0	0
EH HWA CHEMICAL CO.,LTD	1	1	50	1	35
SONG HYUN CERAMIC INDUSTRY CO.,LTD	1	0	50	0	0
JESCO SWEATER LTD.	1	1	50	1	50
BEST FOOD(B.D) LIMITED	1	1	50	2	22
KCLC HEALTH CARE LTD.	2	1	50	2	50
KOBA PROPERTIES LTD.	1	1	50	1	25
VITZ TECH GLOBAL BANGLADESH CO., LTD.	1	1	50	2	50
MAXPEED CARGO (BD) LTD.	3	1	49	3	49
HAK LIM INDUSTRIAL CO.,LTD	1	1	45	1	45
CLAMOON GARMENTS LTD.	1	1	44	1	44
ARIRANG TOOLS FACTORY LTD.	1	1	42	1	42
INCHEON BYUING LTD.	1	1	42	1	42
C3 TECH LTD.	1	1	41	1	41
KUM KWANG CHINA CO.,LTD	1	1	35	1	35
DAE SUNG PRECISION INDUSTRIES CO.,LTD	1	1	35	1	35
HARBIS CONVERTING LTD.	1	1	35	1	35
BEST LABELS LTD.	1	1	25	1	25

* 자료출처 :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해외투자통계

본 책자는 우리 기업들이 방글라데시로 진출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방글라데시의 조세법 및 관련 법령을 2008.1.1 기준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령 적용 등은 반드시 방글라데시 세법 및 조세조약의 관련 조문을 확인한 후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책자의 내용 중 오류나 개선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은 자료를 만드는데 활용하겠습니다.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전화번호 : (02)397-1423~1424

팩스번호 : (02)723-9976

원고작성 및 편집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송 성 권
	행정사무관	이 선 주
	세무조사관	김 헌 국

국세청 재산세과 세무조사관 김 용 진 (397-1757)

인쇄처 : (주)아트팰리스 T.(02)2277-1088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397-1423)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